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610
------------	------

2025. 4. 21.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5. 3. 31. 최기찬 의원 발의 (2025. 4. 2. 회부)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를 근거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으로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및 사업 참여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조합에 대해 총회 전자투표 시행과 온라인 총회 개최 비용을 지원해주는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지정한 사업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아주택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개최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이에 모아주택 사업의 전자투표 시행 및 온라인 총회 개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양한 신기술을 사업에 접목, 신속

정확한 주민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주민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전자투표 시행 비용과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개정조례안은 '24. 12.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됨¹⁾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에도 적용²⁾되는 ①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명동의서 징구 ② 온라인총회 병행 개최 ③ 총회의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에의 소요 비용을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일부개정]

• **주요내용:**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함

• **주요사항**

시행일	조문	현행	개정
'25.12.4.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서면동의서	서면동의서+전자서명동의서(추가)
'25.12.4.	제44조의2(온라인총회)	<신설>	현장총회+온라인총회 병행 가능
'25.6.4.	제45조(총회의 의결)	직접의결+서면의결	직접의결+서면의결+전자의결(추가)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고 있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 (중략) …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 (중략) … 준용한다.

[시행일: 2025. 6. 4.]

현행	개정안
제45조(사업비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③ (생략)	제45조(사업비의 보조 등)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정비법」 제36조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비용 5. 「도시정비법」 제44조의2에 따른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 6.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비용 ②·③ (현행과 같음)

○ 도시정비법이 개정(‘24. 12. 3.)되기 전에는 자연·사회재난 발생 및 감염병 등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가 발생한 경우에 국한하여 조합 총회의 전자투표만 실시할 수 있던 상황³⁾에서, ‘22.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규제샌드박스)⁴⁾를 통해 특

3) 기존 도시정비법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명동의서 징구, 온라인총회 개최 근거가 없었으며, 총회의 전자투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였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 개념: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 추진경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설(개정 ‘18. 10. 16., 시행 ‘19. 1. 17.)하고 이에 따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증특례 업체를 지정

• 최초 지정: 2022. 12. 9.(레디포스트)

• 조합 전자적의결 서비스 실증특례 지정 업체: 10개(레디포스트, 한국전자투표, 한국전자위임, 엔티스, 우리개발, 유보트, 이제이랩컴퍼니, 도시전자투표, 오투웹스 주식회사, 엘람넷)

<출처: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25. 3. 31. 기준>

수 상황이 아니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명동의서 징구, 온라인총회 개최, 총회의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이후 '24. 12월에 이를 반영하여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①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 징구(제36조)와 ②조합 현장총회와 온라인총회 병행(제44조의2)은 '25. 12. 4일에, ③조합 총회 전자투표(제45조)는 '25. 6. 4일에 시행 예정임.

○ 지난해 도시정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됨과 동시에, 서울시는 '24년 시범사업⁵⁾으로 10개의 조합에 대해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⁶⁾하였는데, '25년 참여 조합 설문조사 결과⁷⁾ 전자투표 이용 만족도 98%, 편의성 만족도는 97%로 조사되었으며, 전자투표 도입으로 총회 비용 감소뿐 아니라 의사결정기간이 단축된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붙임2 참조).

-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확대('25. 1~2월: 11개소 선정완료, '25. 6월: 20여 개소 선정예정)하고, 전자투표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치구 및 조합에 배포하는 등 전자투표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⁸⁾.

5)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주거정비과-3390호, 2024. 8. 20.)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보조 및 융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앞선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④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시범사업 참여 조합 성과공유회 개최'('25. 2. 14.)

▲총 투표율 증가(증 47%) ▲사전투표기간 단축(7.2일 감소*) ▲서면결의 비율 감소(감 41.1%)

▲총회비용 감소(감 53백만원)

* 현장투표 불참예정자를 대상으로 당초 서면 방문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 효과

-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전자적 의결 등에 소요되는 비용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사항임.
- 현재 서울시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72개소⁹⁾가 추진 중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전자적 의결 방식을 지원하게 될 경우, 총회 개최의 편의성 제고,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등으로 사업의 활성화 및 모아타운 실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신아현	02-2180-8216

[붙임1] 관계법령 (p.6)

[붙임2] 도시정비법 시범사업 참여조합별 총회 투표집계 현황 (p.10)

[붙임3]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및 조합원 수 (p.11)

8) 「2025년 정비사업 전자투표등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주거정비과-10887호, 2024. 12. 18.)

9) · 가로주택정비사업: 205개소, · 소규모재건축사업: 66개소, · 소규모재개발사업: 1개소 (이하, 조합설립인가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2024. 12. 3.>

1.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

[시행일: 2025. 12. 4.] 제36조

제44조의2(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 ③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시행일: 2025. 12. 4.] 제44조의2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4. 7., 2021. 3. 16., 2022. 6. 10.>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3.>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⑦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⑧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

⑨ 조합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2024. 12. 3.>

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2023. 7. 18., 2024. 12. 3.>

⑪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0., 2024. 12. 3.>

[시행일: 2025. 6. 4.] 제45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 · 정관 · 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 · 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시공보중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 ·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9. 4. 23., 2019. 8. 20., 2021. 7. 20., 2022. 2. 3., 2024. 12. 3.>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총회, 주민합의체 회의,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본다.
2. 국유 · 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로,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구역”으로 본다.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0. 19.>

[시행일: 2025. 6. 4.] 제56조

붙임2
도시정비법 시범사업 참여조합별 총회 투표집계 현황

연번	조합명 (조합원수)	시범사업 투표집계				직전 임시총회 투표집계			사전 투표 단축 기간
		총 투표율	전자 투표	서면 결의서	현장 투표	총 투표율	서면 결의서	현장 투표	
평균		72.2% (증 4.7%)	52.3% (산궂)	15.0% (감 41.1%)	4.8% (감 6.5%)	67.4%	56.1%	11.3%	7.2
1	미성동건영 아파트재건축 (526)	67.1%	53.2%	6.8%	7.0%	60.8%	51.9%	8.9%	10
2	한남5구역 재개발(축) (1,542)	71.9%	42.0%	24.8%	5.1%	67.1%	58.1%	9.0%	6
3	대치쌍용1차 재건축 (689)	50.5%	44.0%	2.8%	3.8%	56.2%	32.0%	24.2%	7
4	수색6구역 재개발(축) (488)	60.9%	50.8%	3.7%	6.4%	76.9%	71.4%	5.5%	9
5	흑석11구역 재개발(축) (691)	92.2%	46.9%	34.4%	10.9%	87.6%	78.7%	8.9%	6
6	영등포신동아 아파트재건축 (486)	81.7%	53.3%	26.1%	2.3%	58.5%	53.3%	5.2%	3
7	왕궁아파트 재건축 (249)	69.9%	61.8%	6.4%	1.6%	54.2%	48.2%	6.0%	7
8	장위15구역 재개발(축) (1,786)	70.2%	54.5%	14.1%	1.6%	61.8%	58.0%	3.8%	3
9	서초신동아 아파트재건축 (1,062)	85.2%	64.5%	15.9%	4.8%	83.7%	53.3%	30.4%	12

* 수색9구역 재개발(축)사업은 전자투표지원 임시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해 집계에서 제외함.

붙임3**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및 조합원 수**

구 분	사업장수	조합원수	비 고
계	272		
가로주택정비사업	55	50명 이하	
	81	50명 초과 ~ 100명 이하	
	50	100명 초과 ~200명 이하	
	16	200명 초과 ~300명 이하	
	3	300명 초과	
소규모재건축	21	50명 이하	
	25	50명 초과 ~ 100명 이하	
	20	100명 초과 ~ 200명 이하	
소규모재개발	1	50명 이하	